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(4-4-3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일반직원 인사위원회(이하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팀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1.4.20)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 2011.4.20)

제3조(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소집)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(의결 정족수)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일반직원의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

2. 법령, 정관 및 본 대학교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록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제9조(비밀엄수)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은 심의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